의 안 검 토 보 고 서

-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 2. 건 명: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3. 안 건 요 지:별 첨
- 4. 검 토 의 견: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9년 5월 20일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춘 용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 조례 안은 2009년 4월 2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4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확대하고,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공간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을 일부 조정함(안 제22조).

나. 대전광역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하고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함(안 제26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개정 등과 관련된 일부용어와 미술 위원회를 "미술장식심의위원회"로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정비하고, 위원회 인원을 35인으로 확대하여 인력을 풀 관리 하고 필요시마다 11인으로 구성·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전문가 확보와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됨.